

제180차 안산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안 산 시 의 회

- 김 정택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보충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 내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주민들이 수년간 사용한 사실상의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정 · 공고 요망

-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주민이 사용하는 공원안의 도로 등과 공공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설치한 마을진입로 및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한 사실이 있는 통로등에 대하여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법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개발에 대하여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축허가, 즉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도로의 설치는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로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체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개특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마목” 규정에서는 도로 ·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형질변경 포함)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최대한 개발을 자제하고 형상을 보존하며,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현황도로등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지정·공고없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황도로에 따른 민원은 현재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시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시장이 지정·공고 할 경우에는 도로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사인간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 우리시가 개입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도로 사용동의 없이 지정·공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많은 현단계에서 도로로 지정·공고 하기에는 어려움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는 현황도로등에 접한 부지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시화공단 출퇴근 차량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안산역 지하차도에서 400여m의 SK주유소 앞의 신길지하 차도를 가기 전에, 도일방향 삼거리에 신호가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준공한 신길 지하차도가 있으나마나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곡역 삼거리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신호체계의 개선과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보는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차로는 지하차도 준공전까지 한시적으로 신호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길택지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좌회전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좌회전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SK주유소삼거리(신길 지하차도위)와 안산역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신길택지개발지구 버스 정류장 설치 및 자전거도로 폭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기존 중앙로의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폭은 평균 4.5m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도시주택공사가 공사 중인 신길 택지개발지구의 원곡역 버스정류장 보도와 자전거도로 폭이 2.0m 정도에 불과합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도는 2.0m를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소 1.1m 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보도와 자전거도로 폭은 최소 3.1m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현장을 답사하여 버스정류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기존 중앙로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폭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준과 동일하게 4.5m 이상으로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 인도폭이 좁아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임을 확인하였으나,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중앙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와
 - 도로에 저촉되는 일부 개인사유지를 매수하여 도로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 현장이용인원,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신길 지하차도 교통 안전을 위한 도로의 폭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신길 지하차도 평면도로 편도 2차선 차로 폭이 3.0m ~ 3.1m 밖에 되지 않음. 차로의 최소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도로는 3.25m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안산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존 도로의 폭과 동일하게 3.4m 이상으로 시정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되,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신길 지하차도의 공사구간은 설계 속도가 60km/hr로 계획되어 있어 관련법 규정에는 적합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신길고가 사거리 ~ 시화공단 간 시화길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신길고가 사거리에서 시화길 시화공단까지 1,500m를 기존의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여 시화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및 물류수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시화길을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며,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시화공단 주변의 평택 ~ 시흥간 민자고속국도, 신설 해안 도로 등이 개통되면 시화길을 경유하여 서안산 IC 등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으므로,
- 시화길을 확장하는 방안보다는 단기적 저투자 방식에 의한 교통용량 증대방안으로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기법 적용, 도로구조 및 교통운영 개선, 신호주기 조정 및 신호등 연동화 등 교통 통제시설 개선, ITS 적극 도입

등으로 도로 운영관리를 측대화하여 교통정체를 우선 해소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정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